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“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”을 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
2.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
3. 전문 자격증 보유 등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

제4조의3제1항제1호 본문 중 “읍·면·동에 인접하는”을 “시·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시·군 또는 구에 속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지역신용보증재단”을 “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조합원”을 “조합원 또는 법인인 준조합원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0조에 따른 준조합원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1조제1항 또는 「산림조합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준조합원 중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준조합원을 말한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준조합원은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6항 중 “가계여신”을 “가계여신 또는 개인사업자여신”으로 한다.

제2장에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6 (여신업무 기준)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 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
 2. 차주의 차입목적, 차입금규모,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
 3.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
 4.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
 5. 산업별,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
- ② 감독원장은 조합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16조의7(금융사고 예방대책)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 4호마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,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
 - 가. 조합 임직원의 사기·횡령·배임·절도·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
 - 나.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
 - 다.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조합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
2.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·평가 등 본·지점의 업무운영에

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

3. 조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조합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합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
4. 전산사무,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·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

제20조 전단 중 “제16조의3”을 “제16조의3, 제16조의5,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감독원장”을 “감독원장”으로 하고 제16조의5제1항의 기준은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(전문인력의 세부요건)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<u>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</u>를 임직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2(전문인력의 세부요건) 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</u></p> <p>2. <u>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</u></p> <p>3. <u>전문 자격증 보유 등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</u></p>
<p>제4조의3(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) ①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승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·면·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</p>	<p>제4조의3(공동유대 변경의 승인범위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야 한다.

1.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읍·면·동에 인접하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의 읍·면. 다만, 공동유대로 포함하고자 하는 읍·면·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닌 읍·면·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·면으로 한다.

2. (생략)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제1항제2호의 경우

가. (생략)

나. 총자산 :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천억원 이상

다. ~ 바. (생략)

제6조(동일인대출한도 등) ①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“금융위가 정하는 대출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·2. (생략)

3.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의하여 대손보증이 이루어지는 대출금

② ~ ⑥ (생략)

-----.

1. ----- 시·군 또는 구에 인접하는 시·군 또는 구에 속하는 -----.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< 삭제 >

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동일인대출한도 등) ①-----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금융진흥원----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.

⑦·⑧ (생략)

<신설>

⑦·⑧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6 (여신업무 기준) ① 조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1.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
 2. 차주의 차입목적, 차입금규모,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
 3.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
 4. 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
 5. 산업별,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현상의 방지
- ② 감독원장은 조합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

<신 설>

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제16조의7(금융사고 예방대책) 조
합은 법 제83조의3제1항 및 시
행령 제20조의2제4호마목에 따
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
사고 관리 및 예방, 이용자 정보
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
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
에 관한 사항

가. 조합 임직원의 사기·횡령
· 배임·절도·금품수수 등
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
한 방지 대책

나.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
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
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

다.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
업무처리로 조합 이용자의
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
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

2.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
에 대한 점검·평가 등 본·
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
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
기준

3. 조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

제20조(준용) 제7조, 제12조제1항 제2호·제3호, 제14조제1항·제3항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5조의3제1항·제3항·제4항, 제16조, 제16조의2, 제16조의3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조합”은 이를 “중앙회”로, “중앙회장”은 이를 “감독원장”으로 한다.

위하여 조합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합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

4. 전산사무,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·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

제20조(준용) -----

 ----- 제16조의3, 제16조의5,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

“감독원장”으로 하고 제16조의5 제1항의 기준은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----